

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(미래교육과)

심 사 보 고 서

2020. 6. 25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0년 6월 5일

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0년 6월 9일

라. 상정일자: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

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(2020. 6. 19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미래비전추진단장 권희자)

가. 제안이유

- “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”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등포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출연대상: (재)영등포문화재단
- 사업내용: 창의예술교육센터 조성 및 운영
 - 기 간: 2019. 9. ~ 2021. 2.(조성), 2021. 3.~(개관·운영)
 - 위 치: 양평동4가 172-1(舊양평2동주민센터 및 양평2치안센터)
 - 규 모: 지하1층/지상3층, 연면적 506.17㎡
 - 조성(안): 전환사회의 청소년을 위한 창의예술교육 공간 조성

○ 출연금액: 90,000천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임경태)

-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서,
- 출연기관인 영등포문화재단은 영등포아트홀 공연예술 진흥과 작품전시 및 보급, 구민회관 및 도서관 운영, 청소년시설 운영관리와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, 문화예술 진흥, 문화복지 증진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재단으로서,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나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바, 사업비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검토결과,
 - 지방자치단체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, 본 동의안에 대한 출연 여부는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.
 - 다만, 위 출연금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, 출연금액은 추후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,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임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(미래교육과)

의안 번호	23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6.

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 이유

“2020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”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출연대상: (재)영등포문화재단

나.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
-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3조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·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

다. 사업내용: 창의예술교육센터 조성 및 운영

- 기 간: 2019. 9. ~ 2021. 2.(조성), 2021. 3.~(개관·운영)
- 위 치: 양평동4가 172-1(舊양평2동주민센터 및 양평2치안센터)
- 규 모: 지하1층/지상3층, 연면적 506.17㎡
- 조성(안): 전환사회의 청소년을 위한 창의예술교육 공간 조성

층	면적(㎡)	기존	공간구성(안)	비고
지하1층	25.12	창고	1인 미디어실	주민센터
1층	198.89	사무실	커뮤니티 공간(다목적 공간), 개방형 복합문화공간, 그린카페	
2층	240.65	사무실	적정기술랩, 아틀리에, 사무실, 회의실	주민센터 + 치안센터
3층/옥상	41.51	직원식당	동네부엌, 옥상텃밭, 오픈테라스, 창고	

- 운영(안)

· 조직구성(안): 총 6명 (센터장1 기획2 운영1 시설1 미화1)

· 프로그램(안): 시대흐름과 지역환경을 연계한 창의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

- 소요예산: 1,590백만원(시비1,500 구비90) ※구비(출연금) 산출내역 <참고사항> 참조

- 그간의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

· 서울시 지역밀착형 예술교육센터 조성사업 공모·선정: '19.7.~8.

· 舊양평2동주민센터 구조안전진단 용역 실시: '19.10.~11.

· 창의예술교육센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: '19.12.

· 창의예술교육센터 조성 및 운영 변경계획 수립: '20.4.

·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, 계약심사 등: '20.5.~'20.10.

· 착공 및 준공: '20.11.~21.2.

· 창의예술교육센터 개관 및 운영: '21.3.~

라. 출연 필요성

- 창의예술교육센터는 아동·청소년이 갖추어야할 미래 핵심역량인 창의·감성 교육을 위한 지역밀착형 예술교육센터로, 학생들에게 학교중심 예술교육에서 벗어나 지역예술인, 예술단체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

- 영등포문화재단은 영등포 문화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문화예술 교육사업(영등포청소년뮤지컬단), 영등포 시민예술단(영등포청소년챔버오케스트라 등)을 운영하는 등 창의예술교육센터 운영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

- 타구(성북구, 동대문구) 지역밀착형 아동·청소년 예술교육센터도 지역 내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우리 구 창의예술교육센터 조성 및 운영을 영등포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

3. 동의내용 및 대상

가. 동의내용: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

나. 출연범위: 창의예술교육센터 조성 및 운영

다. 출연금액: 90백만원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규정

-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 지원)
-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 및 제13조(운영재원 등)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·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(사업의 추진 등) 및 제6조(사업의 지원)

나. 출연금 산출내역

참 고 사 항

가. 관련규정

□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 지원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- 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

-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- ② 구는 재단의 설립·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.

제13조(운영재원 등)

-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,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- ② 구청장은 재단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·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

제5조(사업의 추진 등)

- ① 구청장은 창의·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1. 문화예술(문학, 미술, 음악, 무용, 연극, 영화, 연예(演藝), 사진, 건축, 어문(語文), 출판, 만화 및 체험 사업
 2. 예(禮), 효(孝), 정직, 책임, 존중, 배려, 소통,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
 3. 생명안전 체험 사업
 4. 학생의 진로 탐색·설계에 필요한 진로교육 사업
 5.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
 6. 그 밖에 창의·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창의·인성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지식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사업의 지원)

-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,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나. 출연금 산출내역

○ 출연금	90,000천원
- 기간제근로자보수	34,394천원
· 조성운영	17,202천원(7월~12월,6개월)×1명=17,202천원
· 기획·홍보	8,596천원(10월~12월,3개월)×2명=17,192천원
- 퇴직급여	2,976천원
- 복리후생비	7,789천원
- 소모품비(사무용품,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)	2,488천원
- 업무추진비(운영 간담회비)	3,000천원
- 홍보비(홍보물 제작)	5,353천원
- 회의운영비(심사비 및 자문회의 수당)	4,000천원
- 연구개발비(홈페이지 구축 등)	30,000천원